

수원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13997 판결 [등기명의표시변경등기말소등기이행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소중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선종

피고, 피항소인 B중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박수관, 박영록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남궁율

변론 종결 2021. 3. 4.

판결 선고 2021. 3. 25.

환송 전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7. 19. 선고 2016가합270 판결

환송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19. 선고 2017나2041383 판결

제 1 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4. 8. 선고 2019가합1044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소송비용"을 "소송총비용"으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8. 2. 18. 접수 제6124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고,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최소한 1972년경부터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종중활동을 해 오고 있다. 원고의 종원인
망 R가 1980. 6.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종중(주소 양평군A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나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등기명의인은 원고를 의미한다.

나. 판단

갑 제1, 4, 7호증, 을 제7,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R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래 등기명의인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80. 6. 9. 'B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등기가 마쳐진 무렵 피고는 이미 B종중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온 반면, 원고는
'Q종중'이나 '종중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뿐 B종중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료나 기록이 없다.
- ② 피고는 C씨 51세손 D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그 후손으로 C씨 62세손 E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족보에 E의 관직이 동지중추부사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굳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등기하며 피고와 동일하게 B종중이라 는 명칭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B종중의 주사무소 주소가 '양평군 AW'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피고가 아래와 같이 주사무소의 주소를 당해 토지를 관리하는 종원의 주소로 등기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2007년경부터 토지관리체계를 일원화하며 주사무소의 주소를 변경하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기재된 B종중의 주사무소 주소가 원고의 주사무소와 같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원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현재 지번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표시변경등기
경기 양평군 CS, CT, CU, CV, CW, CX 토지	1975. 4. 11. 소유권보존등기, 주소 양평군 CY	2008. 2. 18. 서울 강동구 BN아파트 BO호로 변경
여주시 CZ, DA, DB, DC, DD	1981. 8. 31. 소유권보존등기, 주소 양평군 DE	2008. 2. 14. 서울 강동구 BN아파트 BO호로 변경
여주시 DF, DG, DH	1985. 6. 28. 소유권보존등기, 주소 양평군 DE	
여주시 DI 내지 DJ 토지	1985. 6. 29. 소유권보존등기, 주소 여주군	2007. 5. 10. 서울 강동구 BN아파트 BO호로 변경

DK

3. 고쳐 쓰는 부분

14쪽 10행의 '을 제18, 20호증'을 '을 제18, 21호증'으로 고친다. C16쪽 5행의 '갑 제20호증'을 '갑 제30호증'으로 고친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규홍, 판사 장지용, 판사 이봉락